

제296회 정례회  
2010. 12. 24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4(금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6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화진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「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2조) 및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(안 제3조)
-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 및 헌혈 홍보, 정보 제공(안 제5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: 윤양한)

-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(헌혈의 권장)에 근거하여 헌혈 장려를 통한 혈액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
- 또한, 전국적으로 10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어(2009. 4.17.)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헌혈 장소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
  - 첫째, 타 시도 조례의 경우 헌혈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은 이유
  - 둘째, 적십자사 및 자원봉사 협회·단체에 대한 지원내용과 예산 소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7. 수정안 요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0. 12. 16, 노광기 의원
- 수정이유
  -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헌혈장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헌혈 장려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일부 조문 내용의 불명확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조례 공포후 다소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
- 주요 수정내용
  -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항 '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' 앞에 '다음'을 삽입
  - 안 제2조(충청북도지사의 책무)를 신설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함
  - "충청북도지사(이하 '도지사'라 한다)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"
  -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'대한적십자사' 앞에 '도지사는'을 삽입 하고, '지사'를 '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'로 하였으며, '필요한 설치'를 '필요한 공간의 설치'로 함
  - 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를 각각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로 하고,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함
  - "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항 ‘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’ 앞에 ‘다음’을 삽입한다.

안 제2조(충청북도지사의 책무)를 신설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”

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‘대한적십자사’ 앞에 ‘도지사는’을 삽입하고, ‘지사’를 ‘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’로 하며, ‘필요한 설치’를 ‘필요한 공간의 설치’로 한다.

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를 각각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로 하고,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제 정 안  | 수 정 안   |
|--|---|
| <p>&lt;신설&gt;</p> <p><b>제2조</b>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</p> <p>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<u>각 호의</u> 사항이 포함된 헌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</b>(헌혈장소의 설치지원) 대한적십자사 또는 <u>지사</u>에서 헌혈을 위한 장소 및 <u>필요한 설치</u>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조</b>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</p> 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<b>제5조</b>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<b>제6조</b>(비밀준수의 의무)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<b>제7조</b>(시행규칙)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<b>제2조</b>(<u>충청북도지사의 책무</u>)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<u>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제3조</b>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</p> <p>.....</p> <p>.....<u>다음 각 호의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4. &lt;제정안과 같음&gt;</p> <p><b>제4조</b>(<u>헌혈장소의 설치지원</u>)<u>도지사는</u> 대한적십자사 또는 <u>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</u>에서 헌혈을 위한 장소 및 <u>필요한 공간의 설치</u>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조</b>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</p> <p>①~③ &lt;제정안과 같음&gt;</p> <p><b>제6조</b>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</p> <p>&lt;제정안과 같음&gt;</p> <p><b>제7조</b>(비밀준수의 의무)</p> <p>&lt;제정안과 같음&gt;</p> <p><b>제8조</b>(시행규칙)</p> <p>&lt;제정안과 같음&gt;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 |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충청북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'도지사'라 한다)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"사업계획"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
2. 헌혈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헌혈장소의 설치지원)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 헌혈을 위한 장소 및 필요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협회·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도지사는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표창등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 도지사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

1.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2.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
3.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

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혈액관리법

- 제4조 (헌혈권장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  
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 
 ③ 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혈액관리법 시행령

- 제2조 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 
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 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  
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## 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

- 제4조(사무소)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  
 ②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.

-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 ①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 
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